

不確實性에 관련한 偶發債務의 財務諸表 표시와 會計監查人の 意見形成에 관한 연구

南相午

I. 問題의 제기와 研究方法 II. 偶發債務의 정의와 회계처리 1. 不確實性과 偶發事項 2. 偶發債務과 偶發資產의 의의 3. 偶發債務의 회계처리 4. 企業會計基準에 의한 偶發債務의 표시	2. 會計監查基準에 의한 監查意見의 구분과 特記事項의 표시 IV. 不確實性의 監查報告書상 표시의 현황과 분석 1. 分析對象企業의 선정과 관련자료 2. 關聯資料에 대한 분석 V. 結論과 提案
III. 不確實性과 監查意見의 관계 1. 不確實性과 監查意見의 구분	附錄：條件附 限定意見을 받은 기업의 限定內容과 偶發債務

I. 問題의 제기와 研究方法

기업의 회계실무와 회계감사인의 감사실무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은 계속기업의 문제인, 파산과 관련되거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잠재적 채무인 우발채무의 문제로 귀착된다.

계속기업과 우발채무의 문제는 분리하여 다룰 수도 있으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함께 다를 필요가 있다. 전자는 기업이 파산될 가능성을 다루어 기업의 최종적 상황의 문제이나, 후자는 파산에 도달하기 전 단지 기업에 불리한 재무적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우발채무가 중대하여 기업에 심각한 재무적 영향을 미침으로서 파산으로 이끄는 문제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문제를 분리하기 보다는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본 논문은 계속기업의 문제 보다는 우발채무의 문제를 다루고자 의도되었다. 계속기업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적, 재무론적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어 논문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발채무를 중심으로 다루되, 우발채무와 관련된 법위내에서 계속기업의 문제를 한정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 이 논문은 證券監督院에서 1990년도 연구재정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우발채무는 중요하다. 우발채무는 당해기간에는 채무로 표면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에는 채무로 현실화되면서 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에 영향을 주고, 손실의 발생으로 **이익흐름(income flow)**에도 불리한 것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사활에도 영향을 주어 계속기업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는 중요한 항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 체권자 등의 정보이용자에게 우발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적 영향을 충분히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발채무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에 우발채무를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주석과 주기에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채무로 이를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어느 쪽에 표시한 것인가 그리고 감사의견의 중간문단에 기재하는 특기사항에 우발채무의 사실과 그 채무적 영향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우발채무의 문제는 계속기업의 문제와 맞물려 기업의 존속여부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기업과 감사실무계에서는 우발채무의 재무제표상의 표시와 감사의견상의 의견형성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상 또는 감사실무상 일치된 기준이 없어 혼란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발채무의 재무제표 표시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형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회계실무와 감사실무를 유도하고자 다음 사항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우발채무를 정의하고 종류를 알아보며, 정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발채무를 비교적 잘 정의하고 있는 미국의 회계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 회계기준의 관계규정을 대비시켜 바람직한 우발채무의 정의와 회계처리를 유도하기로 한다.

둘째, 우발채무와 감사의견의 관계를 검토하여 감사의견의 의견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발채무에 관련한 미국의 **會計監査基準**과 우리나라의 **會計監査基準(案)**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세째,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우발채무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되고 감사의견에도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실태분석을 하기 위하여 최근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입수가능성을 고려하여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5월 31일인 기업(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 대상법인)의 감사보고서로서 불확실성에 관련하여 **條件附 限定意見과 意見拒絕의 감사의견**

을 받은 기업의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네째, 이상의 불확실성과 우발채무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실제자료에 의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실무와 감사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선책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企業會計基準의 개정과 會計監查基準의 개정을 겨냥한 것이다.

Ⅱ. 偶發債務의 정의와 회계처리

1. 不確實性과 偶發事項

不確實性(uncertainties)이란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에 어떤 經濟的 事象이 발생할 것인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으로, 未來事象의 발생이 불확실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사상의 발생여부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시점(결산일인 대차대조표일)에서 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불확실성에 부딪치게 되는데, 불확실성의 예로는 기업의 계속기업 존속여부에 관련한 파산, 정리절차, 법정관리 등과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추정, 계류중의 소송, 지급보증에 의한 우발채무, 제품보증에 의한 판매보증채무, 퇴직금 지급가능성에 의한 퇴직금채무 등이 있다. 이와같이 불확실성의 문제는 광범위하다.

우발채무 이외에도 偶發資產의 문제가 있다. 우발자산은 뒤에서 정의되지만, 우발자산도 重要性(materiality)에 비추어 중대하다면 우발채무와 비슷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재무제표의 작성시점인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의 문제와 우발채무·우발자산의 문제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감사의견에 반영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위의 두 문제는 회계상 다른 점이 있다. 계속기업의 문제는 해당기간에는 발생하지 않고 차후기간에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에는 파산 등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계속기업의 문제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보이용자를 위하여 그 위험을 알리고 감사의견에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발채무·우발자산의 문제는 미래 발생할지도 모를 경제적 사상의 원인행위가 해당기간에 존재하여 이로 인한 손실의 계상이나 위험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發生主義會計(accrual acco-

unting)의 관점에서 당기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손실이나 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偶發事項(contingency)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래의 경제적 사상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기업에 불리한 또는 유리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개념에 의하여 우발손실, 우발이득, 우발채무, 우발자산이 나타난다.

미국의 財務會計基準審議會의 財務會計基準(SFA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우발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우발사항이란 미래사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득(이)를 偶發利得 gain contingency라고 함) 또는 손실(이)를 偶發損失 loss contingency라고 함)에 관한 것으로, 불확실성에 관련한 현재의 상태, 여건, 상황을 말한다. 불확실성의 해소로 자산의 취득, 부채의 감면 또는 자산의 손실, 손상, 부채의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¹⁾

위의 규정에 의하여 우발사항은 불확실성에 관한 것이고, 미래사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해소될 것이며, 현재(대차대조표일)의 상태, 여건, 상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우발손실에 의해 우발채무가, 우발이득에 의해 우발자산이 인식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偶發債務와 偶發資產의 의의

偶發債務(contingent liabilities)란 당기에 미래사상의 원인이 생겼으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손실(우발손실)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또는 손실)로 계상하거나 부채로 계상하지 않을 수 있는(주석 또는 주기함) 것이다. 이에 대해 偶發資產(contingent assets)이란 당기에 미래사상의 원인이 생겼으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득(우발이득)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자산(또는 이득)으로 계상하거나 자산(또는 이득)으로 계상하지 않을 수 있는(주석 또는 주기함) 것이다.

우발자산은 우발채무와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발채무가 우발자산보다 중요시된다. 그 이유는 保守主義(conservatism)의 관점에서 가급적 이익(우발이득)보다는 손실(우발손실)을 표시하여야 安全性의 原則에 맞기 때문이다.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우발채무를 주석 또는 주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발자산의 금액이 크고 중요성이 있을 경우 우발

(1)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5 (1975).

자산도 주석으로 공시하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발채무는 계류중의 소송채무, 지급보증채무, 배서양도어음채무, 할인어음채무만을 가리키나 다른 여러 우발채무가 있다. 이와같이 우발채무를 네가지로 한정시키는 것은企業會計基準에서 이 네가지를 예시하고 있고(의상매출금양도액도 예시됨) 보통 교과서에서도 이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발채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주석, 주기할 사항 이외에도 당기의 손실로 계상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것도 있다.

표 1에는 우발채무의 발생사유가 예시되어 있는데, 우발채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예로 든 것이다.

〈표 1〉 우발채무의 발생사유

- | | |
|-------------------|---------------------|
| 1. 계류중의 소송 | 2. 지급보증 |
| 3. 어음, 수표의 견질제공 | 4. 의상매출금의 양도 |
| 5. 받을어음의 할인 | 6. 받을어음의 배서양도 |
| 7. 제품, 상품의 판매보증 | 8. 도급공사의 공사보증 |
| 9.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 10. 원료, 제품의 구입계약손실 |
| 11.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실 | 12. 은행신용 한도액의 미사용잔액 |
| 13. 세금분쟁에 의한 추가손실 | 14. 노사분쟁에 의한 추가손실 |
| 15. 매출채권의 대손 | 16. 재고자산의 실현손실 |
| 17. 사운권, 쿠폰, 경품권 | 18. 벌과금의 부과 |

표 1의 우발채무 중 보통 우발채무로 생각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7은 판매보증총당금, 8은 공사보증총당금(또는 하자보증총당금), 9는 퇴직급여총당금으로 부채성총당금에 의하여 부채로 계상되는 것이고, 15는 대손총당금으로서 매출채권의 평가계정으로 계상되고 16은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다. 17은 제품판매에 관련하여 고객이 추가적으로 요구할지 모르는 사운품 등에 대한 것이다. 우발자산의 예가 표 2에 표시되어 있다.

〈표 2〉 우발자산의 예

- | |
|-------------------------------|
| 1. 증여, 기부, 보조금, 상여금 등으로 받을 금전 |
| 2. 세금분쟁, 조세심사청구 등으로 받을 금전 |
| 3. 계류중의 소송의 승소로 받을 금전 |
| 4. 손해배상청구로 받을 금전 |
| 5. 불확실한 환급금 |

3. 偶發債務의 회계처리

우발채무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다음 세가지가 있다.

제 1법 : 당기에 손실로 처리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방법

손실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판매보증총당금, 퇴직급여총당금, 공사보증총당금 등 부채성총당금의 예는 여기에 속한다. 대손총당금도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아도 과거경험 등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손실을 추정하여 총당금을 설정한다.

제 2 법 : 주석, 주기로 공시하는 방법

손실의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성이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계류중의 소송과 지급보증의 채무를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외상 매출금 양도로 인한 채무, 배서양도어음과 할인어음의 우발채무를 주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한 경우 재무제표수치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우발채무의 존재사실과 그 재무적 영향을 알려 정보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제 3 법 :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는 방법

손실의 발생이 매우 불확실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도 중요성에 비추어 손실을 계상하지 않아도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상의 세 방법 중 제 1법과 제 2법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미국의 財務會計基準審議會에서는 우발손실을 손실로 처리하여 부채로 계상할 것인가의 판단기준으로 다음 두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무제표 공표이전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자산에 손실이 있었거나 부채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암시되었을 것.
2. 손실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²⁾

이상의 두 조건을 보면 1의 조건은 손실의 발생이 확실시되어 부채의 발생이 확실히 인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채의 수취인, 지급일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볼 수 있다. 2의 조건은 손실액은 막연히 추정되어서는 안되고 합리적 방법에 의해, 그리고 증거에 근거하여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과거의 경험, 전문가의 판단, 자료에 의한 조사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우발채무의 인식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財務會計基準審議會에서 는 다음과 같이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세 경우로 나누고 있다.

1. 상당히 확실성이 있는(possible) 경우 :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확실성 있게 예상되는 경우
2. 합리적으로 확실성이 추정되는 (reasonably possible) 경우 :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추정될 수 있는 경우

(2) *Ibid.*, par. 8.

3. 확실성이 거의 없는 (remote) 경우 :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³⁾

위의 세 경우에 대해 일반적으로 1의 경우 손실로 계상하고 부채를 계상하며(제 1법), 2의 경우 주석, 주기로 공시하고(제 2법), 3의 경우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는다(제 3법).

2의 경우에 대해 財務會計基準審議會에서는 註解書(SFAS Interpretation) No. 14에서 손실액의 범위가 추정될 수 있을 경우 추정의 최소액은 손실로 계상하고 최대액은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⁴⁾ 예를 들어 기업이 결산일 현재 소송에 패소하였으나 손실액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자. 이때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경우 최저 3억원, 최대 10억원이라면, 손실로 3억원을 계상하고 주석에는 10억원을 기재하되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企業會計基準에 의한 偶發債務의 표시

앞에서는 우발채무의 정의와 재무제표상의 표시를 주로 미국의 회계규정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현행의 企業會計基準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우발채무를 정의하지 않으면서 우발채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우발채무에 관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5조(외상매출금양도액 및 받을어음할인액 등의 처리)에서는 외상매출금양도액이 회수 불능일 경우 외상매출금양도액, 받을어음을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경우 받을어음할인액 또는 받을어음양도액 등으로 그 내용을 주기하도록 하였다.

다음 제118조의 3(보충적 주석사항)에서는 8. 계류증인 소송의 내용과 전망, 12.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증의 내용, 13. 우발채무의 금액과 내용을 주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 우발채무는 단지 다섯가지만 열거되고 있다. 또 제118조의 3의 13에서 “우발채무의 금액과 내용”을 주석하도록 함으로써 우발채무에 대한 정의없이 포괄적인 용어인 우발채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제15조와 제118조의 3의 3과 12에서 우발채무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다시 규정하여 반복적 용어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企業會計基準에는 우발자산에 관한 규정의 전혀 없는데 이에 관해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발자산의 규모가 크고 그 재무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추정될 경우 이득과 자산으로 규정하거나 주석, 주기에 의한 공시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주의를 강조하여 우발부채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중대한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우발자산에 마

(3) *Ibid.*, par. 3.

(4) FASB, “Reasonabl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Loss”, *FASB Interpretation No. 14*(1976), par. 4.

찬가지로 회계처리와 공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II. 不確實性과 監査意見의 관계

1. 不確實性과 監査意見의 구분

회계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우발손실(우발채무)과 우발이득(우발자산)을 찾아내어 이들을 당기의 손실(부채)과 이득(자산)으로 계상할 것인가 또는 주석, 주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음에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기업과 상의하여야 한다. 우발채무의 감사절차로는 경영자와 고문변호사에 대한 질문, 이사회 의사록의 검토, 은행 등 관련기관에 대한 조회 등이 있다.

우발채무를 확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후 회계감사인은 우발채무의 재무적 영향을 고려하여 어떤 감사의견을 표명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선택된 감사의견에 우발채무의 내용과 재무적 영향을 기술하는 特記事項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에 의한 계속기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발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견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고 특기사항을 기입하는 문제가 있다. 계속기업 문제의 원인으로는 기업의 파산할 위험 이외에도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회사합병, 영업양도, 영업중단, 결손금의 누적, 자본잠식, 경기침체, 노사분쟁에 의한 파업, 극심한 자금부족, 부채의 과다, 영업(수출)부진 등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되고 있다.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우발채무는 계상되거나 주석, 주기된다. 적정의견에는 계속기업 문제나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중요성이나 재무적 영향에 비추어 기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정의견, 의견거절에는 가급적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企業會計基準에 위배하여 작성되거나 부정, 오류가 중대할 경우 작성되므로 불확실성의 문제와 관련이 없어 이 논문의 대상이 아니다.

계속기업 또는 우발채무의 문제와 관련된 감사의견으로는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이 있다. 어느 의견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적사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요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한정의견이 되나, 매우 중요할 경우 의견거절이 된다. 한정의견이 표명되는 경우는 지적사항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의 구별이 중요한 것은 그 구별이 당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정의견의 경우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도에는 약간의 손상을 입으나, 법률적 또는 영업상의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회사의 경우 管理種目 또는 監理種目으로 분류되고, 2部種目이 되며, 결국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또 신주발행, 사채발행의 제한, 기업공개의 제한 등도 받고,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실추되며, 부채의 차입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가능한 한 의견거절을 회피하고자 한다.

회계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어서 지적사항의 중요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도 의견거절보다는 한정의견을 표명할 위험이 있다. 그러한 경우 회계감사인은 나중에 소송 위험, 감리에 의한 제재 등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생긴다. 이와같이 의견거절의 의견 표명을 꺼리는 것은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고자 하지 않으며 회계감사인도 자유경쟁에 의한 감사계약으로 기업에 유리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의견거절 보다 한정의견을 많이 표명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부채의 과다, 자금부족 등이 보편화된 현상이고, 비록 파산에 임박하여 계속기업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정부의 자금지원, 법정관리,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관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사의견 구분의 관대한 경향은 회계감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며,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 되어 반드시 고쳐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2. 會計監査基準에 의한 監査意見의 구분과 特記事項의 표시

현행의 會計監査基準(1986. 12. 31 최종개정)에서는 제25조에 한정의견을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의 ③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고 있던 사항이 감사보고서일 이후 확정되는 최종결과에 의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의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와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 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한정의견이 발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④에서 한정사유는 그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간문단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제27조에는 의견거절이 규정되어 있는데, ①에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와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 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에 의견거절을 표명하고 그 사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 ⑤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하면서 그밖에 企業會計基準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중간문단에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의견거절사항

과 부적정의견사항, 한정사항이 함께 있을 경우 의견거절이 표명된다는 것도 암시하였다.

제30조에는 特定事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②에서 주석사항이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재무제표에 특별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별도문단에 기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會計監査基準인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SAS)에서 불확실성과 우발채무에 따른 감사의견의 구분과 기재사항에 대해 AU Section 509에서 다루고 있다.⁽⁵⁾

509.21에서는 불확실성을 정의하여 미래사상의 결과에 대한 추정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감사증거는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회계감사인이 불확실성에 대해 감사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감사인의 추정과 회사의 추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의 위배로 보아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이 발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509.23에서는 불확실성에 의한 계속기업의 문제를 다루어 누적적 결손, 극심한 자금부족, 부채지급불능의 경우 그 내용과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항도 어느 정도 중요할 경우에는 한정의견으로 표시되나 기업의 존립이 크게 위태로울 경우에는 의견거절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감사기준을 비교하면 불확실성으로 공표하는 감사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몇 가지 다른 점은 證券管理委員會에서 1991년 새로이 제정한 會計監査基準(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안에는 불확실성에 관련하여 제29조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추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이를 감사법위의 제한으로 보아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표명

②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감사인의 추정과 회사의 추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보아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 표명

③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한 결과 발생가능성이 있으나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을 경우 감사의견을 제한하지 않고 그 내용을 특기사항으로 기재 한다.

—적정의견을 표명하나 특기사항으로 공시함

(5)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uditing Standards Board, "Reports o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 AU Section 509(1974).

위의 안은 사실상 미국의 **會計監査基準**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을 개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속기업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추가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 등 좀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보완사항은 V. 결론과 제안에서 다룬다.

IV. 不確實性의 監査報告書상 표시의 현황과 분석

1. 分析對象企業의 선정과 관련자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은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의 표시와 감사의견의 구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자료를 입수하여 불확실성이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실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재무의 문제와 계속기업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 작성시점에서 자료의 입수 가능성은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의 결산일인 1989. 12. 31과 1990. 5. 31의 上場法人, 登錄法人 其他外監法對象法人에 대해 불확실성에 관련하여 條件附 限定意見을 받은 31개 기업과 意見拒絕의 감사의견을 받은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證券監督院 자료에 의하면 1991. 2. 28 현재 上場法人은 668개사, 登錄法人은 143개사, 外監法對象法人은 4,972개사이다. 여기서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은 각각 다른 것이나, 외감법대상법인에는 상장법인 등록법인이 포함되고 기타 비상장, 비등록의 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외감법대상법인은 가장 광범위한 법인개념이므로,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이 아닌 외감법대상법인은 기타 외감법대상법인이라고 하기로 한다. 외감법대상법인은 1989년도에는 총자산 30억원 이상의 기업이었으나, 1991년도에는 40억원 이상의 기업이다. 상장법인은 증권거래소에 주식, 사채가 상장된 회사이고, 등록법인은 주식발행, 사채발행, 기업공개를 위하여 證券監督院에 등록하는 회사이며, 외감법대상법인은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이다. 이상의 자료는 1991년의 자료이어서 본 논문의 분석대상기업의 결산일과 시차가 있으나 분석상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다.

證券監督院 監理局에서 공표한 1990년도 業務實績統計資料에 의하여 본 논문의 분석대상기업에 관련된 자료가 표 3, 4, 5에 있다.⁽⁶⁾

표 3은 1989년도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감사의견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의 회사인 80.5%가 적정의견을 받고 있고 한정의견은 18.7%로,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을 합쳐서 1%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과연 그런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회계감사기준이 엄격하게 규정 또는 운영되지 않았거나, 회계감사인이 지나치게 관대하였던가, 아니면 회계감사인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 더군다나 이들 회사가 모두 회계실무의 수준이 높은 상장법인이라면 수긍할 수도 있으나 수준이 낮은 등록법인, 기타 외감법대상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믿기 어려운 것이다.

표 4는 1989년도에 한정의견을 받은 894개사의 한정내용을 분류한 것으로, 불확실성에 관련하여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41개사로 4.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인한 것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불확실성이 감사의견에

〈표 3〉 1989년도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감사의견 현황

감 사 의 견	전체 회사수	비 율	12월 상장 회사수
적 정	3,853개	80.5%	461
한 정	894	18.7	26
부 적 정	15	0.3	—
의 견 거 절	25	0.5	2
계	4,787개	100%	489

〈표 4〉 1989년도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한정내용과 회사수

한 정 사 유	회 사 수	비 율
기업회계기준 위배	831개 (20개)	92.9% (76.9%)
불확실성	41 (6)	4.6 (23.1)
감사범위의 제한	22 (0)	2.5 (0)
계	894개 (26개)	100.0% (100%)

* 괄호안은 상장법인수

〈표 5〉 1989년도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 중 불확실성과 관련한 의견거절의 내용과 회사수

의견거절의 사유	회 사 수	비 율
부실채권의 회수 가능성	3개	33.3%
계류증의 소송	3개	33.3
계속기업	3개	33.4
계	9개	100.0

(6) 證券監督院 監理局. 1990年度 業務實績統計資料 (1990).

미치는 영향이 적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감사인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의문도 있다.

표 5는 1989년도에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로 불확실성에 관련된 회사는 9개회사이고, 이들의 의견거절내용은 부실채권의 회수가능성, 계류중의 소송, 계속기업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제는 우발채무나 우발자산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의견거절의 지적사항이 된 것이다.

2. 關聯資料에 대한 분석

불확실성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감사의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1989. 12. 31과 1990. 5. 31이 결산일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에 대해 證券監督院에 비치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⁷⁾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자료에 우발채무, 우발자산이 어떻게 표시되고 감사의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 분석을 기초로 현행의 기업실무와 감사실무를 개선하는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의 附錄에 1989. 12. 31과 1990. 5. 31이 결산일인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 외감법인·상법인 중에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한정의견을 받은 31개 회사의 한정내용,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내용,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손익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의 31개 회사와 표 4의 41개회사가 다른 것은 41개 회사에 1989년중 결산일이 12. 31이 아닌 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1990. 5. 31의 회사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록의 31개회사가 분석대상의 회사로, 이를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이 표에서 분석대상 회사의 절반정도인 15개회사(48.4%)가 기타외감법인·상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其他外監法對象法人은 외감법인·상법인이지만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이 법인은 상장법인, 등록법인에 비하여 회계실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등록법인은 기타외감법인·상법인보다 회계수준이 높으나 상장법인보다 낮은

〈표 6〉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

	회 사 수	비 율
상장법인	6개	19.4%
등록법인	10	32.2
기타외감법인·상법인	15	48.4
계	31개	100.0%

(7) 분석대상기업의 자료입수에 협조해 주신 證券監督院에 감사드린다.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로써 불확실성의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상당수인 25개회사 (80.6%)가 회계실무의 수준이 낮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감사보고서상의 한정내용과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된 우발채무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표 7은 분석대상회사의 한정내용을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서 우발채무의 사유에 속하는 계류증의 소송이 있는 회사는 11개회사(30.6%)이고, 지급보증, 공사이행보증이 있는 회사는 비교적 적은 수이며, 우발자산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미수금의 회수불가능이 있는 회사가 비교적 많으며, 계속기업 문제가 있는 회사가 14개사(38.9%)로 많은 수의 회사가 이 문제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은 분석대상회사의 재무제표주석에 기재된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을 요약한 것으로, 이들은 한정의견에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이들 내용 중 계류증의 소송과 지급보증이 각각 25.0%로 가장 많은데, 지급보증에 대해 받을어음의 할인과 배서양도, 백지어음과 수표를 합치면 24개사(60.0%)로 가장 많은 수가 되어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 중 절반이상이 지급보증에 관련한 우발채무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급보증 관련의 우발채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 존재하고 감사의견의 구분(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회사가 우발채무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고, 우발채무가 있어도 공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우발자산이 주석에 기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企業會計基準에서 우발자산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회계감사인의 우발자산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분석대상회사의 총자산규모, 자기자본규모, 당기순손익 규모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 자료를 분석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규모가 어떤 규모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정내용과 우발채무, 우발자산이 이들 규모에 비추어 어떤重要性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 7〉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한정내용의 분류

	회 사 수	비 율
계류증의 소송(법인세 분쟁 등)	11개	30.6%
지급보증	1	2.8
공사이행보증, 추가공사손실	3	8.3
매출채권, 미수금의 회수불가능	7	19.4
계속기업(정리기업, 산업합리화대상, 누적적자등)	14	38.9
계	36개	100.0

* 1개회사에 2개 이상의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총 36개 회사가 됨.

〈표 8〉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우발채무

	회 사 수	비 율
계류증의 소송	10개	25.0%
지급보증	10	25.0
받을어음의 할인, 배서양도	5	12.5
백지어음, 백지수표	9	22.5
제품, 상품의 판매보증	1	2.5
공사이행보증, 추가공사손실	1	2.5
퇴직금	3	7.5
손해배상청구	1	2.5
계	40개	100.0

* 1개회사에 2개 이상의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총 40개 회사가 됨.

〈표 9〉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총자산 규모에 따른 분류

총자산 규모	회 사 수	비 율
100억 원 미만	11개	36.7%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10	33.3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	1	3.3
1,000억 원 이상~5,000억 원 미만	3	10.0
5,000억 원 이상~10,000억 원 미만	4	13.4
16,856억 원인 회사(대우조선)	1	3.3
계	30개	100.0

* 1개회사의 자료는 별명임.

표 9에 의하면 총자산규모는 100억 원 미만의 회사가 11개회사(36.7%),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회사가 10개회사(33.3%), 합계 21개회사(70.0%)가 되어, 분석대상회사의 상당수가 소규모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자산이 16,856억 원인 대우조선이 거대기업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대우조선의 경우 당시에 노사분쟁,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계속기업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표 10에서는 분석대상회사의 자기자본규모에 따른 분류로 31개회사 중 11개회사(36.7%)가 자기자본이 負(-)인 자본잠식의 회사라는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 사실은 자본잠식이 엄청나서 심지어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금까지도 모두 소모되고 부채만의 자산으로 구성된 회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부채가 과다해지면 적자기업으로서 기업은 도산으로 치닫게 되고 당장 도산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상환, 이자지급의 압력으로 재무구조가 정상화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여기서 적어도 자기자본규모가 負(-) 회 인사(특히 負(-)의 금액비중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비록 계속기업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로 확실하거나 다른 수단(예,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해 기업존속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의견거절이 표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잠식의 정도가 극심한 회사로 진홍기업(1,234억 원)과 범양상선(31,197억 원)이 있다. 그 밖에 표 10에서 자기자본이 陽(+)인 회사이지만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7개회사(23.3%)로, 이에 대해 자기자본이 負(-)인 회사를 합치면 분석대상기업 대부분의 자기자본규모가 극히 적은 규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1은 분석대상회사의 당기순손익규모에 따른 분류에 관한 것으로, 분석대상회사의 절반이상인 16개회사(55.2%)가 적자기업으로서 당기순손실의 기업이다. 이들 회사의 당기순손실은 비교적 거액인데, 특히 대우조선의 당기순손실은 2,390억 원으로 규모가 크다. 순이익을 표시하고 있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대부분 5억 원 미만으로 11개 회사(37.8%)가 5억 원 미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로써 분석대상기업의 대부분의 순이익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순손실도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분석대상회사로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에 대한 것이다.

표 12는 불확실성의 우발채무, 우발자산에 관련하여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에

〈표 10〉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분류

자기자본 규모	회사수	비율
자기자본이 -인 회사 :		
10억 원 미만	—	—
10억 원이 상~50억 원미만	6개	20.0%
50억 원이 상~100억 원미만	—	—
100억 원이 상~200억 원미만	1	3.4
200억 원이 상~500억 원미만	2	6.7
1,234억 원인 회사(진홍기업)	1	3.3
31,197억 원인 회사(범양상선)	1	3.3
소 계	11	36.7
자기자본이 +인 회사 :		
10억 원 미만	7	23.3
10억 원이 상~50억 원미만	4	13.3
50억 원이 상~100억 원미만	2	6.7
100억 원이 상~200억 원미만	3	10.0
200억 원이 상~500억 원미만	2	6.7
3,239억 원인 회사(대우조선)	1	3.3
소 계	19	63.3
계	30개	100.0%

* 1개 회사의 자료는 불명임.

〈표 11〉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당기순손익 규모에 따른 분류

당기순손익 규모	회사수	비율
당기순손실 :		
5억 원미만	1개	3.5%
5억 원이 상~10억 원미만	1	3.5
10억 원이 상~20억 원미만	5	17.2
20억 원이 상~50억 원미만	3	10.3
50억 원이 상~100억 원미만	2	6.9
100억 원이 상~200억 원미만	1	3.5
200억 원이상 (대우조선 2,390억 원)	3	10.3
소 계	16	55.2
당기순이익 :		
5억 원미만	11	37.8
5억 원이 상~10억 원미만	—	—
10억 원이 상~20억 원미만	1	3.5
20억 원이 상~50억 원미만	—	—
50억 원이 상~100억 원미만	—	—
121억 원인 회사(범양상선)	1	3.5
소 계	13	44.8
계	29개	100.0

* 2개 회사의 자료는 불명임

관한 것이다. 6개 회사가 있는데, 상장법인 1개회사와 기타외감법대상법인 5개회사로 되어 있다. 의견거절사항으로는 매출채권과 관계회사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성에 의한 것이 4개회사이고, 주요부동산의 법정분쟁 등 계류중의 소송에 관련된 회사가 2개회사이다. 전자는 우발손실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계류중의 소송에 관한 것이다.

이 표에서 총자산규모는 (주)삼화가 2,531억원으로 대기업에 속하고, 다른 5개 회사는 중소기업에 속한다. 자기자본규모는 (-)인 기업이 3개회사이고 (+)인 기업이 3개회사이다. (+)인 기업의 자기자본규모는 왜소한 편이다. 다음 당기순손익 규모는 당기순손실기업이 3개회사이고, 당기순이익기업이 2개회사이며, 1개회사의 자료는 얻을 수 없었다.

표 13은 분석대상기업으로서 계속기업의 문제로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에 관한 것이다. 3개회사가 있는데, 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외감법대상법인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들 회사의 의견거절 사항으로는 휴업상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중대한 우발채무, 누적적자 등에 관한 것이다. 조선견직의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문제 이외에도 企業會計基準 위배사항도 중대하여 의견거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의견거절 사유가 계속기업문제와企

〈표 12〉 우발채무, 우발자산에 관련하여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

1. (주)삼화 : 상장법인, 외상매출금, 관계회사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
총자산 2,531.12억 원, 자기자본 -5.83억 원, 당기순이익 -12.83억 원
2. 시민소리사 : 외감법대상법인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
총자산 70.30억 원, 자기자본 5.04억 원, 당기순이익 1.27억 원
3. 신윤기업 : 외감법대상법인, 주요부동산의 법적 분쟁
총자산 102.51억 원, 자기자본 -2.52억 원, 당기순이익 -1.08억 원
4. 아남광학 : 외감법대상법인,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
총자산 351.29억 원, 자기자본 32.01억 원, 당기순이익 5.83억 원
5. 한국콘도미니엄 : 외감법대상법인, 법인세 소송 계류중
총자산 239.15억 원, 자기자본 -134.47억 원, 당기순이익 -29.99억 원
6. 한일산업 : 외감법대상법인, 사우디아라비아 채권 확인 불가능
총자산 480.95억 원, 자기자본 31.53억 원, 당기순이익 ?

* 아남광학과 한일산업에는 감사범위의 제한사항이 있음.

〈표 13〉 계속기업의 문제에 관련하여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

1. 남산전기 : 외감법대상법인, 휴업상태로 계속기업 예측 불가능
총자산 4.01억 원, 자기자본 1.49억 원, 당기순이익 -1.28억 원
2. 대한조선공사 : 상장법인, 회사정리절차개시, 범원에 채권·채무 미확정
총자산 2,975.13억 원, 자기자본 -4,275.98억 원, 당기순이익 -631.41억 원
3. 조선견직 : 등록법인, (주)한국생사에 대한 채무대리변제의 우발채무, 누적적자운영, 자금부족으로 계속기업이 의문시됨. 기타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중대함.
총자산 158.64억 원, 자기자본 46.67억 원, 당기순이익 -12.18억 원

企業會計基準 위배의 두 문제로 가중되어 의견거절이 표명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총자산규모에서 볼 때 계속기업의 문제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자기자본은 대한조선공사의 경우 -4,276억원으로 엄청난 자본잠식이 있어, 그 금액이 총자산 2,975억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그밖에 세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당기순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V. 結論과 提案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음의 결론을 얻었으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한다. 아래의 제안이 앞으로 개정될 企業會計基準과 會計監査基準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1. 우발채무, 우발자산과 계속기업문제의 재무제표상의 표시

(1) 우발채무(또는 우발손실)에 대한 정의와 회계처리가 잘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발채무는 계류증의 소송, 지급보증, 받을어음의 할인과 배서양도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이를 이외에도 의상매출금의 양도를 추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우발채무가 이 정도 범위로 공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발채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우발손실의 개념을 도입하여 의상매출금 등의 대손, 판매보증채무, 공사이행보증채무, 퇴직금채무, 구입계약채무, 손해배상채무 등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우발자산(또는 우발이득)에 대한 정의와 회계처리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우발자산보다는 우발채무를 중요시하여 우발자산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企業會計基準에서도 이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 기업의 실제자료에 의하면 우발자산이 나타나고 있고, 때때로 우발자산의 존재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주석에 우발자산을 표시할 필요가 있고, 감사의견의 구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企業會計基準에 우발자산을 규정하되 우발이득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계속기업문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재무제표 주석에 그 내용, 전망과 재무적 영향을 기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기업 문제는 재무제표주석보다는 감사의견에 특기사항으로 표시되고 감사의견의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으나, 企業會計基準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계속기업의 문제는 자주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로 되는 수가 많으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공시를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企業會計基準 제118조의 3의 17에서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시킬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계속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불확실성에 의한 감사의견의 구분과 특기사항의 표시

(1) 우발채무, 우발자산의 공시와 계속기업의 문제가 감사보고서에 잘 표시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수가 있어 會計監查基準에서 이의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우발채무와 계속기업 문제의 공시를 회피하고자 하고 회계감사인도 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감사의견에도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에 의하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전체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의 회사가 우발채무와 계속기업 문제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이 감사의견이 양호한 것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우발채무가 없었거나 계속기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에 적정의견이 되었거나 이들 문제의 비중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공표되었다고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발채무의 존재를 은폐하고 계속기업 문제를 가볍게 다루었던 정보를 왜곡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어 會計監查基準에서 이의 공시와 감사의견에의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이에 관한 구별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두 의견의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 의견거절로 판정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의견거절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항이 중대하면 한정의견으로 매우 중대하면 의견거절로 공포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를 검토하면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거절이 될 수 있는 기업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사의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重要性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또 회계감사인간에 제각기 다른 감사의견이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구별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기업에 막대한 자본잠식에 있을 경우 또는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정의 견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의견거절을 줄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다. 회계감사인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감사실무에서 의견거절의 표명에 대해 판대한 경향(부적정의견의 경우도 비슷함)이 있어 양호한 감사의견이 많이 공표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의견거절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의견거절이 적다는 것이 우리나라 회계 실무와 감사실무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므로, 회계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으며 회계감사의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거절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3) 감사의견의 한정사항과 의견거절사항의 상당수가 계속기업의 문제와 관련되고 있어 계속기업문제에 대한 공시강화, 감사의견의 구분과 특기사항의 기재에 대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에 의하면 계속기업의 문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이고, 이들 회사에 있어서 계속기업문제의 공시와 감사의견에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감사실무에서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소송사건이 빈번해질 경우 회계감사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속기업문제의 공시와 감사의견에의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속기업문제는 기업의 사활에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다루고 감사의견도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견거절이 될 경우 기업의 불이익이 있고 기업의 도산을 재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판단기준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

(4)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채무, 계속기업의 문제 이외에 중대한 企業會計基準의 위배, 중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등의 사항이 있어 두가지 이상의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의견은 지적사항에 대한 벌을 가중시켜 한정의견보다는 의견거절을 표명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앞의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지적사항에 대해 한정의견이 발표되기도 하고 의견거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지적사항이 여러가지라고 해서 반드시 의견거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의 지적사항의 전체적인 중요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會計監查基準에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의 재무제표주석상의 공시, 감사의견상의 특기사항의 기재에 대

한 표준양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대상기업의 실제자료에 의하면 우발채무에 관한 주석, 감사의견상의 특기사항이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불충분하게 기술되고 있다. 표준양식은證券監督院 또는 韓國公認會計士會를 중심으로 마련하여 이를 회계감사인 모두가 따르도록 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공시를 하고 감사실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문제점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외감법 대상법인 중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1989년도의 경우 겨우 0.52%(4,787개회사 중 25개회사)로 극히 적은 수의 회사만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가 극소수인 것은 기업회계의 수준과 회계감사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좋은 감사의견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외감법대상법인에는 상장법인 이외에도 기업회계의 수준이 낮은 등록법인, 비상장 및 비등록의 외감법대상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에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의 비율이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하여 기업회계와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의 수가 적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제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채무와 계속기업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감사의견을 받는 결과가 되어 기업회계와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을 더욱 낮추는 것이 될 것이다. 이로써 기업회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財務部, 證券監督院 등 감독기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회계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들 감독기관의 규제강화는 물론이고 회계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韓國公認會計士會의 자율규제와 공인회계사의 엄격한 감사기준의 적용과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附錄 :

條件附 限定意見을 받은 기업의 限定內容과 偶發債務

다음 자료는 결산일이 1989. 12. 31과 1990. 5. 31인 기업 중 불확실성에 의한 조건부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에 관한 것이다. 기업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되 다음 번호에 따라 자료를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 1) 법인의 분류(상장법인, 등록법인, 기타외감법대상법인의 여부)
- 2) 결산일
- 3) 감사법인
- 4)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 5) 주요한정내용
- 6) 주요우발채무의 내용

1. 경남기업(주)

- 1) 상장법인 2) 1989. 12. 31 3) 안전회계법인
4) 8,666.57억 원, 271.67억 원, 4.06억 원
5)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추가공사손실액 추정불가
6)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공사연대보증내역 2,256.5억 원

2. 경남제사(주)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2) 1989. 12. 31 3) 세동회계법인
4) 50.27억 원, 4.45억 원, 1.25억 원
5) 관련회사 채무보증으로 인한 근저당설정 등기말소 소송의 불리여부
6) 상기 계류중의 소송, 소송가액 5억 원

3. 광성전자(주)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2) 1989. 12. 31 3) 산동회계법인
4) 65.58억 원, 39.26억 원, 1.74억 원
5) 양도소득세 24.85억 원에 대한 소송 계류중
6) 상기 계류중의 소송

4. 국제철강(주)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2) 1989. 12. 31 3) 안전회계법인
4) 106.41억 원, -21.93억 원, -18.85억 원
5)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결손금누적, 총부채의 총자산 초과

5. 금성의료기(주)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2) 1989. 12. 31 3) 삼일회계법인
4) 리스료 대납액 구상을 위한 소송, 대납액 9.32억 원
5) 백지어음 9매 견질로 제공

6. (주)금성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2) 1989. 12. 31 3) 안전회계법인
4) 256.87억 원, 5.03억 원, -21.60억 원
5) 회사정리절차 개시, 계속기업 존속여부 불확실
6) 받을어음할인액 25.8억 원, 연대보증 51억 원, 백지어음 11매

7. 기상전자(주)

- 1) 기타외 감법대 상법인 2) 1989. 12. 31 3) 세동회계법인
4) 161.78억원, 5.45억원, -81.02억원
5) 법인세 추정액 21.38억원 소송계류중, 기업회계기준 위배 거액

8. 대우조선(주)

- 1) 등록법인 2) 1989. 12. 31 3) 청운회계법인
4) 16,855.90억원, 3,239.37억원, -2,390.16억원
5) 기업존속 불확실, 조선업계 불황, 총차입금 1조 1천억원
6) 지급보증액 5,987억원과 11.34억불, 견질어음·수표 다수

9. (주)민주일보사

- 1) 등록법인 2) 1989. 12. 31 3) 대주합동회계사무소
4) 187.41억원, 2.36억원, -14.94억원
5) 법인세추정액 5.93억원에 대한 소송, 기업회계기준 위배 거액
6) 할인어음, 백지어음 및 백지수표

10. 범양상선(주)

- 1) 등록법인 2) 1989. 12. 31 3) 산동회계법인
4) 8,063.12억원, -3,119.70, 120.68억원
5) 인정상여소득 원천징수 불이행액 부과취소소송 51.22억원, 기업회계기준 위배
6) 지급보증 161.4억원, 백지어음 및 백지수표

11. (주)부산수리조선소

- 1) 등록법인 2) 1989. 12. 31 3) 성신합동회계사무소
4) 271.36억원, 61.30억원, 1.29억원
5) 대한조선공사의 종속회사로, 대한조선공사 정리절차 진행중
6) 연대보증 94.85억원, 34만불

12. (주)부흥종합건설

- 1) 등록법인 2) 1989. 12. 31 3) 안진회계법인
4) 195.17억원, 11.81억원, -23.77억원
5) 해외공사 미수금, 영업보증금 129억원 회수가능성 불확실
6) 지급보증 55억원, 견질제공어음

13. 삼의건설(주)

- | | | |
|---|-----------------|-----------|
| 1) 상장법인 | 2) 1989. 12. 31 | 3) 영화회계법인 |
| 4) 1,475.99억 원, 180.80억 원, 0.02억 원 | | |
| 5) 해외공사미수금, 영업보증금, 재고자산 총 269억 원의 회수가능성 불확실 | | |
| 6) 자급보증 3,984억 원, 계류중 소송 | | |

14. 서울주철공업(주)

- | | | |
|---------------------------------------|-----------------|-----------|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 2) 1989. 12. 31 | 3) 삼덕회계법인 |
| 4) 44.46억 원, 7.57억 원, 1.71억 원 | | |
| 5) 계류중 소송 2.45억 원에 대한 공탁금 2.2억 원 회수여부 | | |
| 6) 계류중 소송 | | |

15. (주)세모

- | | | |
|-----------------------------------|-------------------------|--------------|
| 1) 등록법인 | 2) 1989. 12. 31 | 3) 한림합동회계사무소 |
| 4) 604.22억 원, 103.57억 원, 16.73억 원 | 5) 법인세추징액 소송계류중 7.24억 원 | |
| 6)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 37.7억 원 | | |

16. 세종건설(주)

- | | | |
|--------------------------------|-----------------|-------------|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 2) 1989. 12. 31 | 3) 대영신한회계법인 |
| 4) 33.37억 원, 3.01억 원, -8.08억 원 | | |
| 5) 계속기업 여부 불확실, 당기순손실 -8.08억 원 | | |
| 6) 입주지연 보상금에 대한 소송 계류중 | | |

17. 신흥목재(주)

- | | | |
|--|-----------------|-----------|
| 1) 등록법인 | 2) 1989. 12. 31 | 3) 삼덕회계법인 |
| 4) 326.41억 원, -320.24억 원, 1억 원 | | |
| 5) 자급보증 40억 원, 결손금 360억 원, 자본잠식,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 | | |
| 6) 자급보증 4억 원, 할인어음 8.6억 원 | | |

18. 영생건설(주)

- | | | |
|--|-----------------|-------------|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 2) 1989. 12. 31 | 3) 정광화공인회계사 |
| 4) 83.28억 원, 16.30억 원, 0.96억 원 | | |
| 5) 부당의득금 반환청구소송 3.29억 원, 기업회계기준위배사항 5건 | | |
| 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 | |

19. 정우개발(주)

- | | | |
|--|-----------------|-----------|
| 1) 상장법인 | 2) 1989. 12. 31 | 3) 청운회계법인 |
| 4) 1,932.65억 원, 106.13억 원, -139.05억 원 | | |
| 5) 부도어음 152억 원 회수가능성, 해외건설면허 반납, 산업합리화대상기업 | | |
| 6) 부도어음 152억 원, 채무보증액 133억 원, 계류중의 소송 | | |

20. 조선선재(주)

- | | | |
|---------------------------------|-----------------|-----------|
| 1) 상장법인 | 2) 1989. 12. 31 | 3) 안전회계법인 |
| 4) 288.43억 원, 56.90억 원, 2.16억 원 | | |
| 5) 토지관련 불입금 4.74억 원 반환소송 | | |
| 6) 할인어음 25.4억 원, 견질체공어음 35.4억 원 | | |

21. (주)중원레미콘

- | | | |
|--------------------------------------|-----------------|-----------|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 2) 1989. 12. 31 | 3) 안전회계법인 |
| 4) 55.60억 원, 5.57억 원, 2.77억 원 | | |
| 5) 경영권분쟁,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 1.69억 원 회수가능성 | | |
| 6) 계류중의 소송, 받을어음 할인액 11.2억 원 | | |

22. 진흥기업(주)

- | | | |
|--|-----------------|-----------|
| 1) 상장법인 | 2) 1989. 12. 31 | 3) 영화회계법인 |
| 4) 1,807.89억 원, -1,233.85억 원, -324.80억 원 | | |
| 5) 외화공사미수금 1,038.8억 원, 영업보증금 102.7억 원 회수가능 | | |
| 6) 지급보증 107억 원, 대화어음 3억 원 | | |

23. 크라운전자(주)

- | | | |
|----------------------------------|----------------|-----------|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 2) 1990. 5. 31 | 3) 청운회계법인 |
| 4) 20.42원원, -21.41억 원, -14.17억 원 | | |
| 5) 조업중단으로 인한 계속기업문제 | | 6) 퇴직금 |

24. 한국경전기(주)

- | | | |
|--------------------------------|-----------------|-----------|
| 1) 등록법인 | 2) 1989. 12. 31 | 3) 세동회계법인 |
| 4) 80.76억 원, 15.24억 원, 3.28억 원 | | |
| 5) 법인세추징가능성, 소송계류중 | | |
| 6) 견질, 담보제공어음 | | |

25. 한국정보통신(주)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 2) 1989. 12. 31
- 3) 세화회계법인
- 4) 48.39억원, -30.44억원, -14.64억원
- 5) 당기순손실, 결손금 누적으로 부채의 자산 초과, 계류증의 소송
- 6) 카드조회 손실충당금

26. 한국증공업(주)

- 1) 등록법인
- 2) 1989. 12. 31
- 3) 안전회계법인
- 4) 7,782.23억원, -483.24억원, -344.29억원
- 5) 현대증공업에 대한 정산금 청구소송 1,387억원
- 6) 현대증공업,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채무

27. 한산기업(주)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 2) 1989. 12. 31
- 3) 산동회계법인
- 4) 45.98억원, -22.80억원, -0.88억원
- 5) 누적결손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계속기업의 문제

28. 한스제약(주)

- 1) 등록법인
- 2) 1989. 12. 31
- 3) 영화회계법인
- 4) 75.03억원, -12.36억원, -23.29억원
- 5) 영업활동의 중단, 계속기업가능성 회박

29. (주)한양

- 1) 상장법인
- 2) 1989. 12. 31
- 3) 안전회계법인
- 4) 7,410.30억원, -12.36억원, -23.29억원
- 5) 해외공사 추가 손실액 추정 불확실
- 6) 지급보증 472.20억원, 백지어음 및 백지수표

30. 한일여객(주)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 2) 1989. 12. 31
- 3) 산동회계법인
- 4) 120.97억원, -31.03억원, -13.82억원
- 5) 투자자산과다보유 및 부채과다로 인한 결손 누적 37.2억원
- 6) 퇴직급여충당금부족액, 백지어음 및 백지수표

31. (주)한진조선

- 1) 기타외감법대상법인
- 2) 1989. 12. 31
- 3) 성신합동회계사무소
- 4) 227.87억원, -133.57억원, -67.22억원
- 5)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합병예정, 정리절차 진행중
- 6) 지급보증